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0년 3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6% 증가(전월대비 0.3% 감소)

-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함.
 - 전월대비로는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어 0.3%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의복 및 모피, 고무·플라스틱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함(전월대비 4.6%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부동산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 운수·창고 등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함(전월대비 4.4% 감소).

◆ 2020년 3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8.0% 감소, 설비투자는 9.8%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3.3%)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32.0%), 화장품 등 비내구재(-3.3%) 판매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8.0% 감소함(전월대비 1.0%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2.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3.8%) 투자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9.8% 증가함(전월대비 7.9%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28.4% 감소하였음.

◆ 2020년 3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1% 하락, 선행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4% 하락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1.2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6p 하락함.

◆ 2020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1%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 동월대비 0.3% 상승)

- 2020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5(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함(전월 대비 0.6%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7%), 주택·수도·전기·연료(1.2%), 음식·숙박(1.0%), 보건(1.6%), 기타 상품·서비스(1.4%), 주류·담배(0.7%), 의류·신발(0.1%)은 상승, 가정용품·가사서비스(-0.9%), 통신(-0.9%), 오락·문화(-2.5%), 교육(-2.4%), 교통(-2.3%)은 하락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안은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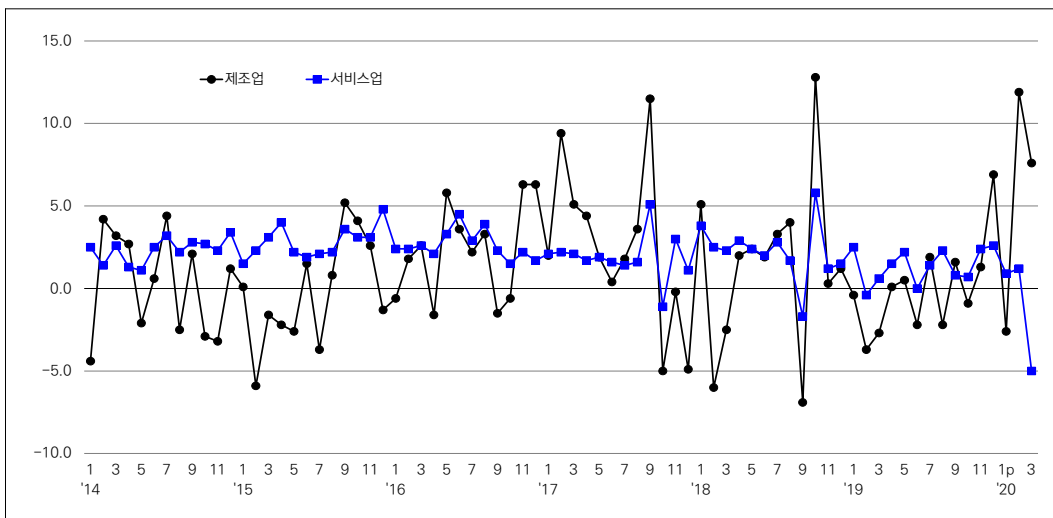
	연간	분기				분기				월					
		2017	2018	2019	2018				2019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3월	2월p	3월p
생산	전 산업	2.6	1.6	0.6	1.5	2.1	0.1	2.8	-0.9	0.4	0.7	1.9	-1.0	4.9(-3.4)	0.6(-0.3)
	광공업	2.5	1.5	-0.1	-0.8	2.3	0.2	4.4	-2.4	-0.3	0.3	2.2	-2.5	11.3(-3.8)	7.1(4.6)
	제조업	2.3	1.3	0.1	-1.2	2.1	-0.1	4.6	-2.2	-0.6	0.5	2.4	-2.7	11.9(-4.0)	7.6(4.6)
	건설업	11.4	-4.2	-6.9	2.3	-2.4	-8.6	-7.0	-10.2	-6.8	-8.2	-2.9	-7.6	5.3(-2.6)	1.5(2.6)
	서비스업	1.9	2.3	1.4	2.9	2.4	1.0	2.8	0.9	1.3	1.5	1.9	0.6	1.2(-3.5)	-5.0(-4.4)
소비	소비재 판매	1.9	4.3	2.4	5.4	5.0	3.9	3.0	1.6	2.0	2.2	3.4	2.4	-2.4(-6.0)	-8.0(-1.0)
투자	설비투자	14.4	-3.6	-6.2	11.1	-4.9	-12.3	-6.8	-18.7	-6.7	-1.9	3.7	-15.9	15.1(-5.2)	9.8(7.9)
물가		1.9	1.5	0.4	1.1	1.5	1.6	1.8	0.5	0.7	0.0	0.3	0.6	1.0(-0.2)	0.1(-0.6)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3) 2019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19년 4월, 2020년 3월, 2020년 4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고, 식품 이외는 0.4%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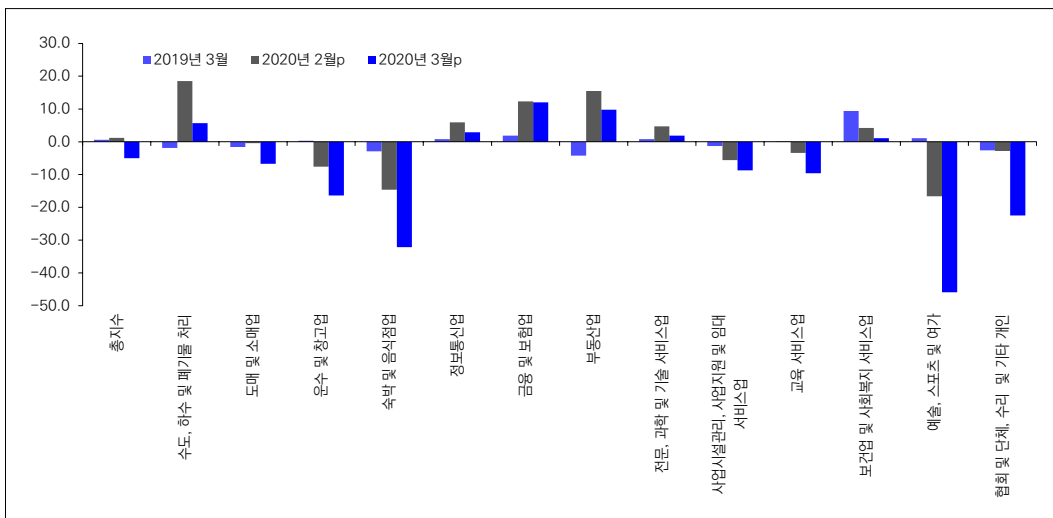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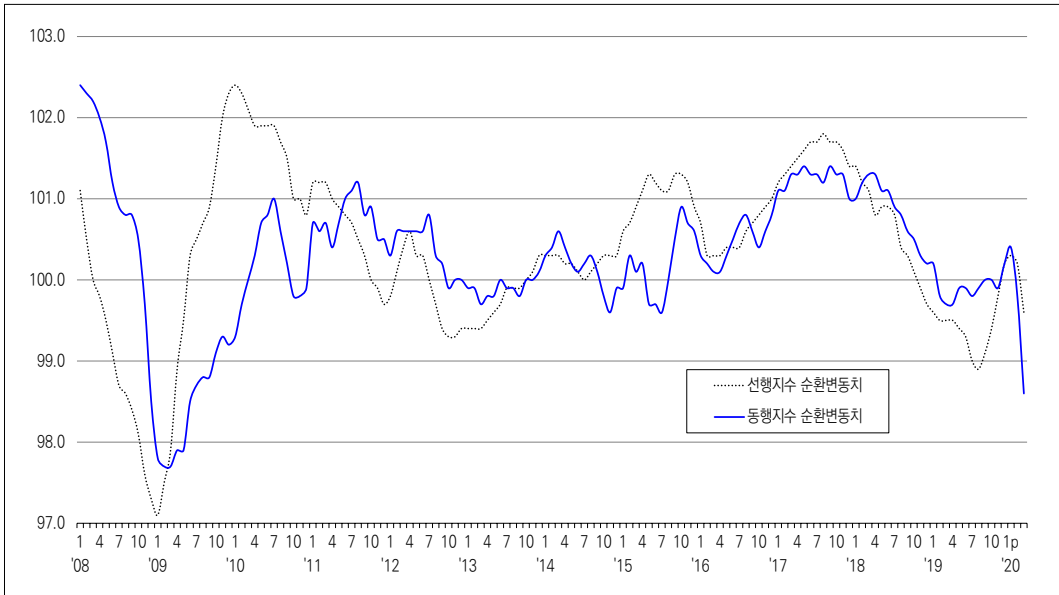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연구원)

● 고용 동향

◆ 4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76천 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831천 명 증가

- 2020년 4월 경제활동인구(27,734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550천 명(-1.9%) 감소함.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6천 명 감소한 26,562천 명으로,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3천 명 감소하고, 남성 취업자는 183천 명 감소함.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3천 명 감소한 1,172천 명으로, 실업률은 4.2%를 기록함. 남성 실업자(675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72천 명 감소, 여성 실업자(497천 명)는 1천 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남성이 4.2%(0.4%p 하락), 여성은 4.2%(0.1%p 상승)임.
- 2020년 4월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한 62.0%임.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0%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하고, 남성(72.3%) 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7%p 하락함.
- 2020년 4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한 59.4%임.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한 69.3%,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한 49.8%를 기록함.
 - 15~64세 고용률은 65.1%(1.4%p 하락)로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5.7%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비교해 1.2%p 하락한 74.2%이고, 여성은 1.7%p 하락한 55.8%임.
- 2020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831천 명 증가한 16,991천 명임.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과 '수강'은 전년동월대비 17천 명 증가하였고, '육아'와 '가사'는 279천 명 증가함. '취업준비' 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95천 명 증가하고, '쉬었음'은 437천 명 증가함(그림 2 오른쪽 참조).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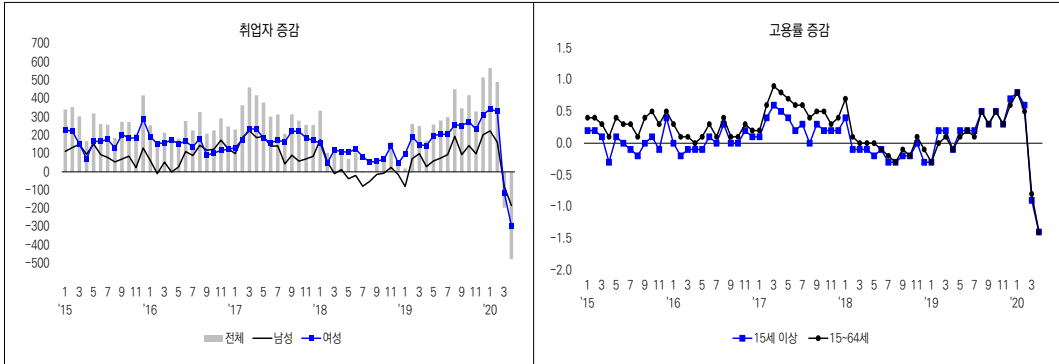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18	2019	2020		
					4월	4월	2월	3월	4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3,931	44,182	44,504	44,122	44,444	44,698	44,712	44,725
	(증가수)	(325)	(252)	(322)	(251)	(322)	(316)	(303)	(281)
	경제활동인구	27,748	27,895	28,186	28,029	28,284	27,991	27,789	27,734
	(증가수)	(329)	(148)	(291)	(117)	(255)	(342)	(-213)	(-550)
	취업자	26,725	26,822	27,123	26,868	27,038	26,838	26,609	26,562
	(증가율)	(1.2)	(0.4)	(1.1)	(0.5)	(0.6)	(1.9)	(-0.7)	(-1.8)
	(증가수)	(316)	(97)	(301)	(123)	(171)	(492)	(-195)	(-476)
	(남성)	(127)	(4)	(91)	(13)	(29)	(162)	(-81)	(-183)
	(여성)	(189)	(94)	(210)	(111)	(142)	(330)	(-115)	(-293)
	경제활동참가율	63.2	63.1	63.3	63.5	63.6	62.6	62.2	62.0
	(남성)	(74.1)	(73.7)	(73.5)	(74.2)	(74.0)	(72.6)	(72.5)	(72.3)
	(여성)	(52.7)	(52.9)	(53.5)	(53.2)	(53.6)	(52.9)	(52.1)	(52.0)
	고용률	60.8	60.7	60.9	60.9	60.8	60.0	59.5	59.4
	(남성)	(71.2)	(70.8)	(70.7)	(71.0)	(70.6)	(69.7)	(69.5)	(69.3)
(여성)	(50.8)	(50.9)	(51.6)	(51.1)	(51.4)	(50.7)	(49.9)	(49.8)	
실업자	1,023	1,073	1,063	1,161	1,245	1,153	1,180	1,172	
실업률	3.7	3.8	3.8	4.1	4.4	4.1	4.2	4.2	
(남성)	(3.8)	(3.9)	(3.9)	(4.2)	(4.6)	(4.0)	(4.2)	(4.2)	
(여성)	(3.5)	(3.7)	(3.6)	(4.0)	(4.1)	(4.2)	(4.4)	(4.2)	
비경제활동인구	16,183	16,287	16,318	16,093	16,160	16,708	16,923	16,991	
(증가수)	(-5)	(104)	(31)	(134)	(67)	(-26)	(516)	(831)	
15~64세	생산가능인구	36,860	36,796	36,791	36,801	36,816	36,718	36,695	36,669
	(증가수)	(21)	(-63)	(-5)	(-66)	(15)	(-86)	(-112)	(-146)
	참가율	69.2	69.3	69.5	69.7	69.8	69.0	68.3	68.0
	(남성)	(79.3)	(79.1)	(78.8)	(79.5)	(79.2)	(78.2)	(77.8)	(77.6)
	(여성)	(59.0)	(59.4)	(60.0)	(59.7)	(60.1)	(59.7)	(58.5)	(58.3)
	고용률	66.6	66.6	66.8	66.6	66.5	66.3	65.4	65.1
	(남성)	(76.3)	(75.9)	(75.7)	(76.0)	(75.4)	(75.1)	(74.5)	(74.2)
(여성)	(56.9)	(57.2)	(57.8)	(57.2)	(57.5)	(57.3)	(56.0)	(55.8)	
취업자	24,559	24,511	24,585	24,524	24,498	24,339	23,982	23,875	
(증가수)	(218)	(-48)	(74)	(-34)	(-26)	(107)	(-393)	(-622)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20. 5), 『2020년 4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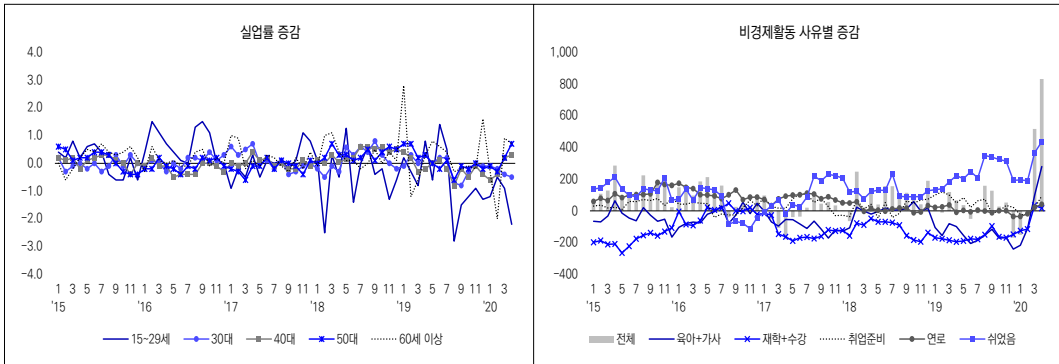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학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0대는 취업자 수 감소폭 축소, 30~50대는 감소폭 확대

○ 2020년 4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274천 명, 5.9%)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20대(-159천 명, -4.3%), 30대(-172천 명, -3.1%), 40대(-190천 명, -2.9%), 50대(-143천 명, -2.2%) 연령층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대 연령층 취업자는 감소세가 소폭 둔화(-159천 명, 3월 -176천 명)되는데, 20대 초반 연령층 취업자 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138천 명, 3월 -142천 명)되고, 20대 후반 연령층 취업자에서 감소폭이 축소(-21천 명, 3월 -34천 명)됨.

– 30대 초반 연령층 취업자는 증가폭을 유지(19천 명, 3월 18천 명)하고 30대 후반 연령층

취업자에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191천 명, 3월 -126천 명)됨. 30대 초반 미혼 여성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60천 명, 3월 45천 명)된 반면 기혼 여성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54천 명, 3월 -33천 명)됨. 30대 후반 미혼 취업자는 증가폭이 유지(20천 명, 3월 20천 명)되고 기혼 여성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110천 명, 3월 -63천 명)되어 미혼 여성의 고용 증가세 유지와 기혼 여성의 고용 이탈이 관찰됨.

- 40대 연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0천 명 감소하여 감소세가 확대(3월 -120천 명)됨. 40대 초반 취업자는 감소폭이 소폭 확대(-46천 명, 3월 -23천 명)되었고, 후반(-144천 명, 3월 -97천 명) 연령층에서 감소폭이 크게 증가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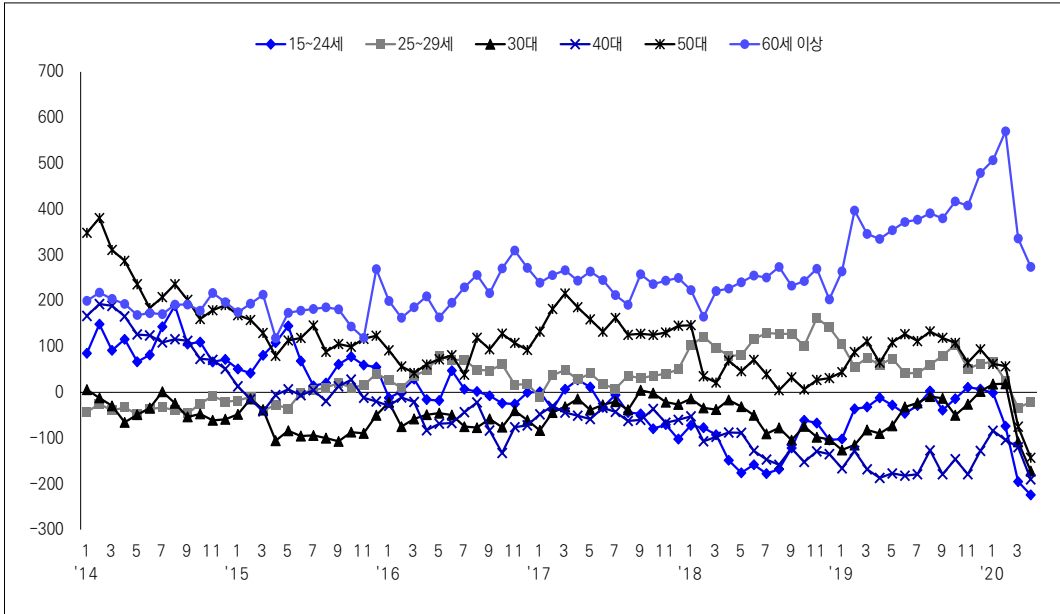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18	2019	2020		
				4월	4월	2월	3월	4월
전 체	26,725 (316)	26,822 (97)	27,123 (301)	26,868 (123)	27,038 (171)	26,838 (492)	26,609 (-195)	26,562 (-476)
15~19세	247 (3)	205 (-42)	198 (-7)	189 (-76)	216 (27)	194 (-25)	150 (-53)	129 (-87)
20~29세	3,660 (-3)	3,699 (39)	3,747 (48)	3,661 (7)	3,682 (21)	3,663 (-25)	3,520 (-176)	3,524 (-159)
20~24세	1,368 (-34)	1,292 (-77)	1,272 (-20)	1,299 (-73)	1,260 (-39)	1,215 (-49)	1,119 (-142)	1,123 (-138)
25~29세	2,292 (30)	2,408 (116)	2,475 (68)	2,362 (80)	2,422 (60)	2,447 (25)	2,402 (-34)	2,401 (-21)
30~39세	5,643 (-29)	5,582 (-61)	5,529 (-53)	5,624 (-17)	5,534 (-90)	5,501 (19)	5,407 (-108)	5,362 (-172)
30~34세	2,593 (-139)	2,512 (-81)	2,493 (-19)	2,531 (-72)	2,472 (-59)	2,529 (64)	2,486 (18)	2,491 (19)
35~39세	3,050 (110)	3,070 (20)	3,037 (-34)	3,093 (56)	3,062 (-31)	2,972 (-45)	2,921 (-126)	2,871 (-191)
40~49세	6,783 (-50)	6,666 (-117)	6,504 (-162)	6,689 (-88)	6,502 (-187)	6,426 (-104)	6,376 (-120)	6,312 (-190)
50~59세	6,302 (152)	6,346 (44)	6,444 (98)	6,375 (69)	6,439 (65)	6,358 (57)	6,308 (-75)	6,296 (-143)
60세 이상	4,090 (242)	4,324 (234)	4,701 (377)	4,331 (227)	4,666 (335)	4,696 (570)	4,848 (336)	4,939 (274)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20. 5), 『2020년 4월 고용동향』.

- 50대 연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3천 명 감소(50대 초반 -52천 명, 50대 후반 -91천 명)하여 감소폭이 확대(3월 -75천 명)되고,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자가 274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3월 336천 명)된.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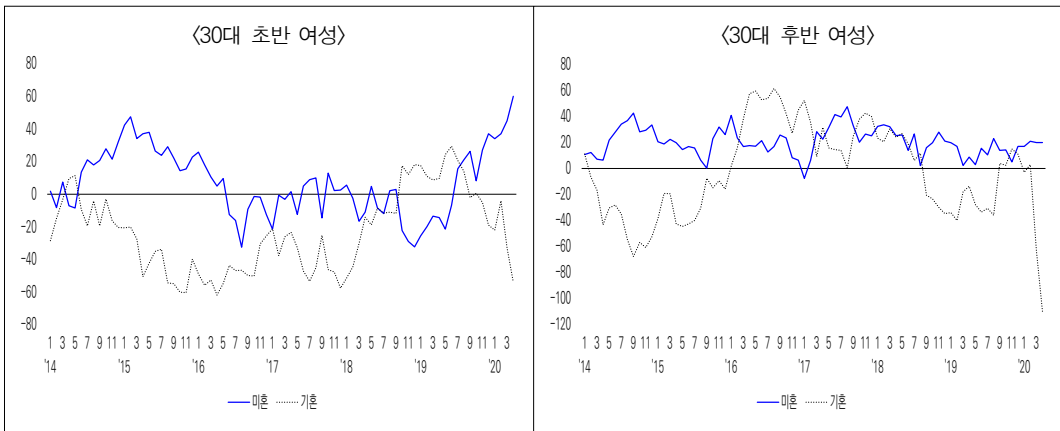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30대 여성 혼인여부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상용직 증가폭 축소, 임시·일용직 감소폭 확대

- 2020년 4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19,919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382천 명(-1.9%)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6,644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94천 명(-1.4%) 감소함.
- 4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증가폭이 감소(전년동월대비 400천 명 증가, 3월 459천 명)하고 일용직은 감소폭이 확대(-195천 명, 3월 -173천 명)됨. 임시직은 58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3월 -420천 명)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2017	2018	2019	2018	2019	2020		
				4월	4월	2월	3월	4월
전 체	26,725 (316)	26,822 (97)	27,123 (301)	26,868 (123)	27,038 (171)	26,838 (492)	26,609 (-195)	26,562 (-476)
비임금근로자	6,791 (51)	6,739 (-52)	6,683 (-56)	6,825 (-16)	6,737 (-88)	6,445 (-5)	6,553 (-62)	6,644 (-9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08 (24)	1,651 (43)	1,538 (-114)	1,637 (49)	1,567 (-70)	1,459 (-145)	1,398 (-195)	1,388 (-17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4 (44)	3,987 (-87)	4,068 (81)	4,059 (-48)	4,088 (28)	4,024 (149)	4,139 (124)	4,195 (107)
무급가족종사자	1,110 (-17)	1,101 (-9)	1,077 (-24)	1,129 (-18)	1,083 (-46)	962 (-8)	1,016 (8)	1,061 (-22)
임금근로자	19,934 (265)	20,084 (150)	20,440 (357)	20,043 (140)	20,301 (258)	20,393 (497)	20,056 (-134)	19,919 (-382)
상용근로자	13,428 (366)	13,772 (345)	14,216 (444)	13,677 (319)	14,001 (324)	14,596 (616)	14,561 (459)	14,401 (400)
임시근로자	4,992 (-132)	4,851 (-141)	4,795 (-56)	4,920 (-83)	4,876 (-45)	4,507 (-13)	4,284 (-420)	4,288 (-587)
일용근로자	1,514 (31)	1,460 (-54)	1,429 (-31)	1,446 (-96)	1,425 (-21)	1,290 (-107)	1,211 (-173)	1,230 (-195)
1~17시간	1,362 (95)	1,520 (158)	1,821 (301)	1,419 (73)	1,781 (362)	1,937 (274)	1,593 (-196)	1,672 (-109)
18~35시간	3,051 (-169)	3,690 (639)	3,581 (-109)	2,682 (-32)	3,122 (440)	3,400 (288)	3,456 (331)	8,138 (5,016)
36시간 이상	21,930 (421)	21,209 (-720)	21,314 (105)	22,405 (10)	21,781 (-624)	20,883 (-212)	19,953 (-1,592)	15,268 (-6,513)
주당 평균 근로시간	42.8	41.5	40.7	42.5	41.2	39.9	38.3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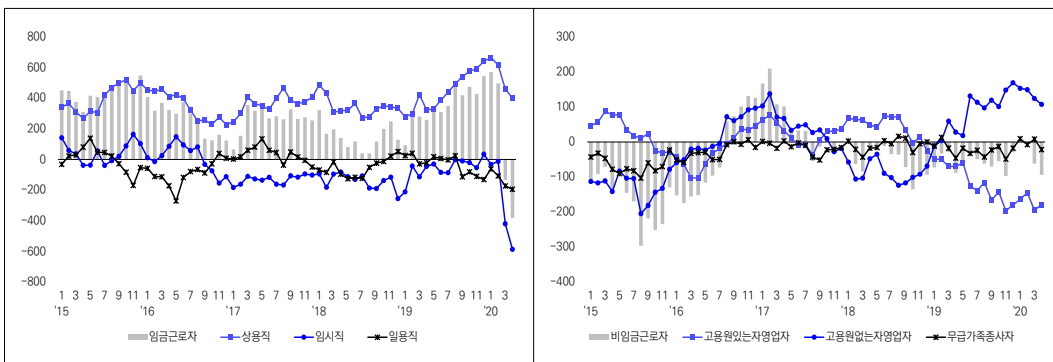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2) 2020년 4월은 조사대상주간에 선거일이 포함되어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 및 증감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영향을 받음.

자료 : 통계청(2020. 5), 『2020년 4월 고용동향』.

[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07천 명 증가(3월 124천 명)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9천 명 감소(3월 -195천 명)하여 감소폭이 축소됨.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전환(-22천 명, 3월 8천 명)함.

◆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감소 지속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농림어업에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및 협회·단체·수리·기타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됨.
 - 2020년 4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7천 명)과 농림어업(73천 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함.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전환(19천 명, 3월 -27천 명)하고 운수 및 창고업은 증가폭이 감소(34천 명, 3월 71천 명)함.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12천 명, 3월 -109천 명), 협회·단체·수리·기타(-99천 명, 3월 -32천 명), 교육서비스업(-130천 명, 3월 -100천 명), 건설업(-59천 명, 3월 -20천 명)은 감소폭이 확대됨. 도매 및 소매업은 감소폭이 축소(-123천 명, 3월 -168천 명)됨.
- 4월은 조사대상주간에 선거일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어 따라 단시간 근로자(1~36시간 미만)는 크게 증가(4,906천 명, 3월 136천 명)함. 1~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감소폭이 축소(-189천 명, 3월 -231천 명)됨.
 - 초단시간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176천 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111천 명), 교육서비스업(-51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23천 명), 예술·스포츠·여가(-14천 명) 위주로 감소함.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2017	2018	2019	2018	2019	2020		
				4월	4월	2월	3월	4월
전 산업	26,725 (316)	26,822 (97)	27,123 (301)	26,868 (123)	27,038 (171)	26,838 (492)	26,609 (-195)	26,562 (-476)
농림어업	1,279 (6)	1,340 (62)	1,395 (55)	1,394 (54)	1,406 (13)	1,194 (80)	1,399 (134)	1,479 (73)
광업	23 (4)	19 (-4)	15 (-4)	22 (1)	15 (-7)	14 (-1)	16 (1)	15 (0)
제조업	4,566 (-18)	4,510 (-56)	4,429 (-81)	4,473 (-68)	4,421 (-52)	4,445 (34)	4,423 (-23)	4,377 (-44)
전기·가스·증기	72 (-4)	70 (-2)	68 (-2)	73 (2)	67 (-6)	77 (7)	72 (5)	65 (-2)
수도·원료재생	115 (2)	127 (12)	135 (8)	124 (7)	128 (4)	143 (17)	146 (21)	149 (21)
건설업	1,988 (119)	2,034 (47)	2,020 (-15)	2,023 (34)	1,993 (-30)	1,951 (-10)	1,960 (-20)	1,934 (-59)
도매 및 소매업	3,795 (41)	3,723 (-72)	3,663 (-60)	3,735 (-61)	3,658 (-76)	3,573 (-106)	3,527 (-168)	3,536 (-123)
운수 및 창고업	1,405 (-22)	1,407 (2)	1,431 (25)	1,409 (0)	1,424 (15)	1,506 (99)	1,481 (71)	1,457 (34)
숙박 및 음식점업	2,288 (-3)	2,243 (-45)	2,303 (61)	2,247 (-28)	2,288 (42)	2,275 (14)	2,135 (-109)	2,077 (-212)
정보통신업	783 (-1)	837 (55)	861 (23)	815 (30)	859 (44)	849 (-25)	846 (-19)	852 (-7)
금융 및 보험업	794 (-9)	840 (46)	800 (-40)	839 (61)	794 (-46)	787 (-15)	772 (-20)	783 (-11)
부동산업	540 (57)	528 (-12)	556 (28)	518 (-30)	562 (44)	548 (25)	532 (0)	525 (-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092 (-9)	1,096 (4)	1,157 (60)	1,077 (-23)	1,125 (49)	1,185 (36)	1,132 (-27)	1,144 (19)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1,374 (-17)	1,311 (-63)	1,312 (1)	1,353 (0)	1,300 (-53)	1,317 (35)	1,315 (20)	1,317 (1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058 (55)	1,110 (52)	1,076 (-33)	1,127 (81)	1,117 (-10)	1,038 (24)	1,045 (-61)	1,077 (-40)
교육서비스업	1,907 (45)	1,847 (-60)	1,883 (37)	1,834 (-106)	1,889 (55)	1,828 (-10)	1,770 (-100)	1,759 (-13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921 (61)	2,046 (125)	2,206 (160)	2,063 (144)	2,190 (127)	2,275 (202)	2,260 (82)	2,267 (77)
예술·스포츠·여가	428 (22)	445 (16)	495 (50)	439 (20)	472 (33)	507 (56)	474 (9)	483 (11)
협회·단체·수리·기타	1,222 (-3)	1,236 (14)	1,233 (-3)	1,249 (30)	1,260 (11)	1,223 (-23)	1,202 (-32)	1,160 (-99)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64 (-5)	48 (-17)	75 (27)	51 (-20)	59 (8)	89 (44)	88 (37)	89 (30)
국제 및 외국기관	12 (-5)	7 (-5)	12 (5)	5 (-6)	11 (6)	15 (8)	15 (4)	1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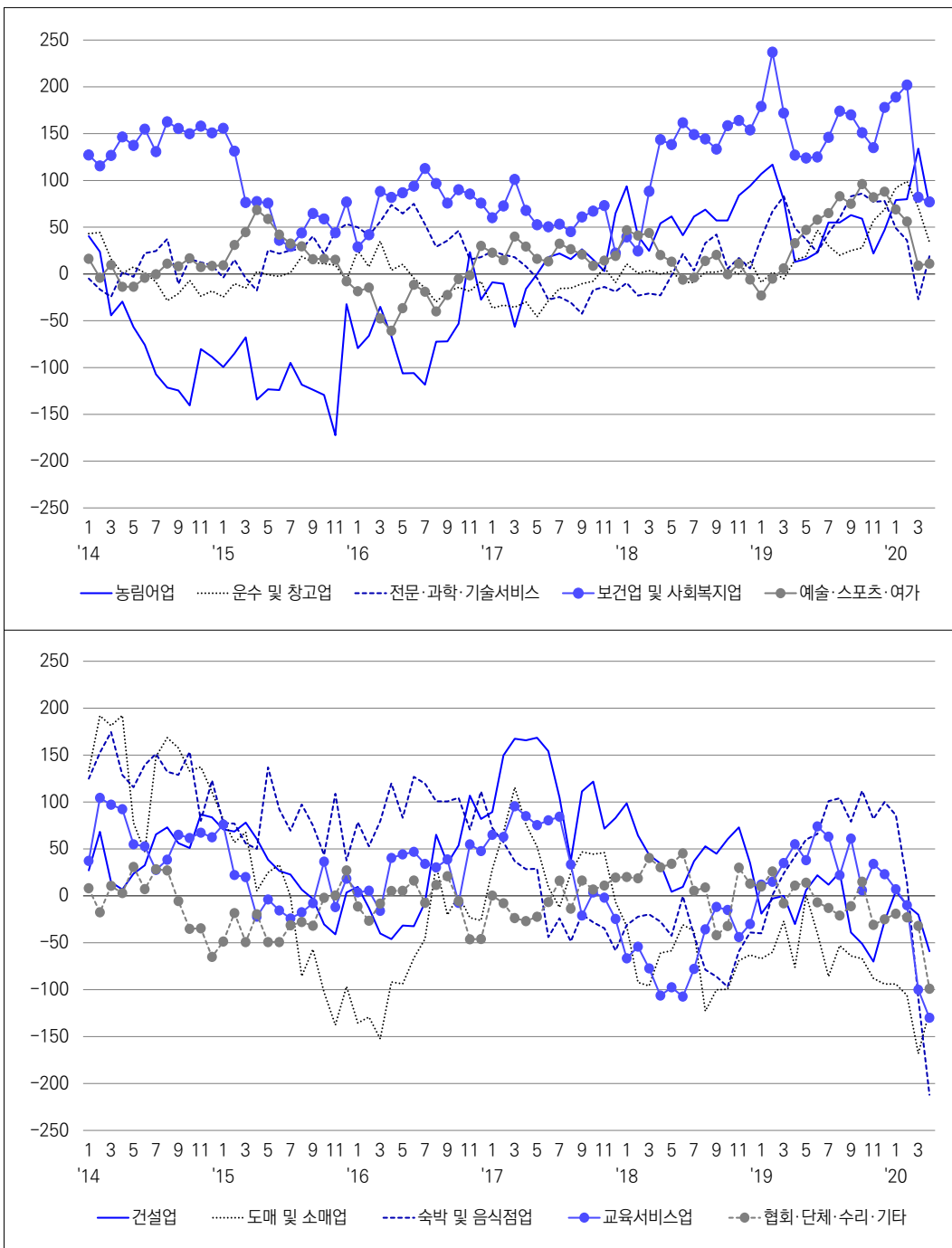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2) 10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20. 5), 『2020년 4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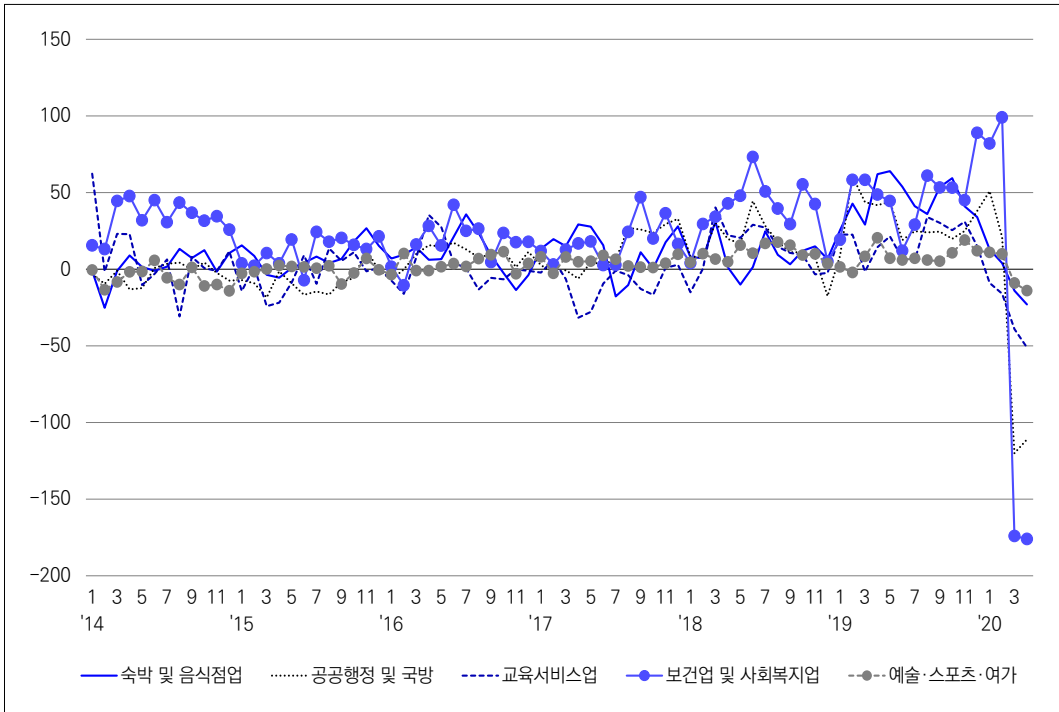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산업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감 추이(일시휴직 제외)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0년 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6.6% 하락

- 2020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03천 원(6.6%↓)임.
 - － 2020년 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58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2% 하락하였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46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함.
 -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폭이 둔화된 가운데 특별급여 감소폭도 확대된 영향으로 임금상승폭이 크게 둔화됨.
 -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5.2%로 전년동월대비 5.2%p 상승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표 1〉 임금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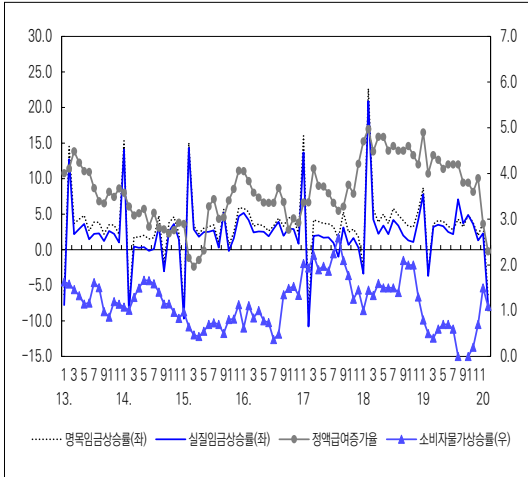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19		2020		
				1~2월	2월	1~2월	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3.3)	3,376 (5.3)	3,490 (3.4)	3,792 (2.6)	3,644 (-3.3)	3,749 (-1.2)	3,403 (-6.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2.6)	3,592 (5.1)	3,702 (3.1)	4,025 (2.3)	3,866 (-3.7)	3,587 (-7.2)	
	정액급여	2,764 (3.6)	2,891 (4.6)	3,010 (4.1)	3,006 (4.5)	2,962 (4.0)	3,085 (2.6)	3,031 (2.3)
	초과급여	190 (0.6)	197 (3.7)	202 (2.7)	190 (4.8)	189 (5.7)	198 (3.9)	199 (5.6)
	특별급여	464 (-2.2)	504 (8.5)	490 (-2.8)	829 (-5.4)	715 (-27.8)	681 (-17.9)	357 (-50.1)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5.1)	1,428 (5.5)	1,517 (6.2)	1,463 (6.2)	1,388 (6.0)	1,542 (5.4)	1,460 (5.2)	
소비자물가지수	103.0 (1.9)	104.5 (1.5)	105.1 (0.4)	104.7 (0.6)	104.7 (0.5)	105.8 (1.3)	105.8 (1.1)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1.9	-3.7	-2.4	(-7.6)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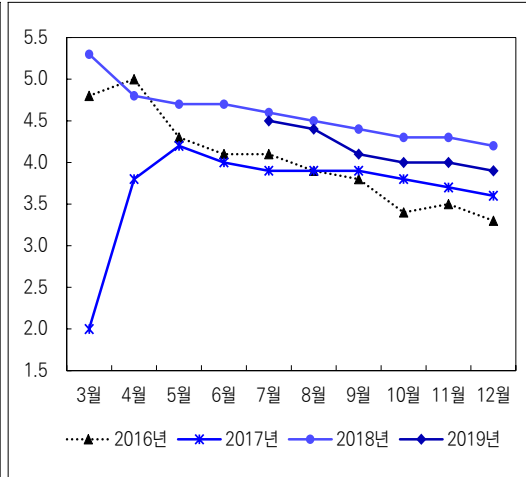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20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7.6% 감소함.

◆ 2019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3.9%

○ 2019년 1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함.

◆ 2020년 2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 하락

○ 2020년 2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각각 -3.4%, -16.4%임.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3,08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5,07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4%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체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감소는 반도체 관련 산업의 성과급 축소,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체계 변경 등으로 특별급여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8	2019	2019		2020	
				1~2월	2월	1~2월	2월
중소 규모	소 계	3,019 (4.6)	3,139 (4.0)	3,256 (4.4)	3,190 (-2.4)	3,292 (1.1)	3,081 (-3.4)
	상용임금총액	3,217 (11.5)	3,338 (3.7)	3,462 (11.0)	3,394 (-2.9)	3,490 (0.8)	3,260 (-4.0)
	정액급여	2,723 (4.7)	2,841 (4.3)	2,830 (4.6)	2,801 (4.3)	2,915 (3.0)	2,877 (2.7)
	초과급여	172 (4.8)	175 (2.0)	165 (5.0)	162 (5.4)	168 (2.3)	170 (4.9)
	특별급여	322 (1.9)	322 (-0.2)	468 (1.4)	432 (-34.2)	407 (-13.0)	212 (-50.8)
	비상용임금총액	1,422 (5.3)	1,505 (5.8)	1,442 (6.6)	1,361 (6.2)	1,513 (4.9)	1,432 (5.3)
대규모	소 계	5,305 (6.5)	5,356 (1.0)	6,669 (-3.3)	6,077 (-6.9)	6,135 (-8.0)	5,079 (-16.4)
	상용임금총액	5,474 (6.4)	5,492 (0.3)	6,819 (-3.2)	6,206 (-6.9)	6,253 (-8.3)	5,165 (-16.8)
	정액급여	3,735 (3.8)	3,843 (2.9)	3,879 (3.4)	3,761 (2.5)	3,909 (0.8)	3,772 (0.3)
	초과급여	324 (0.0)	335 (3.5)	318 (3.5)	322 (5.2)	340 (6.8)	341 (6.0)
	특별급여	1,415 (15.7)	1,313 (-7.2)	2,622 (-12.3)	2,122 (-21.1)	2,005 (-23.5)	1,052 (-50.4)
	비상용임금총액	1,509 (7.8)	1,712 (13.4)	1,844 (-1.2)	1,882 (1.2)	2,076 (12.6)	1,985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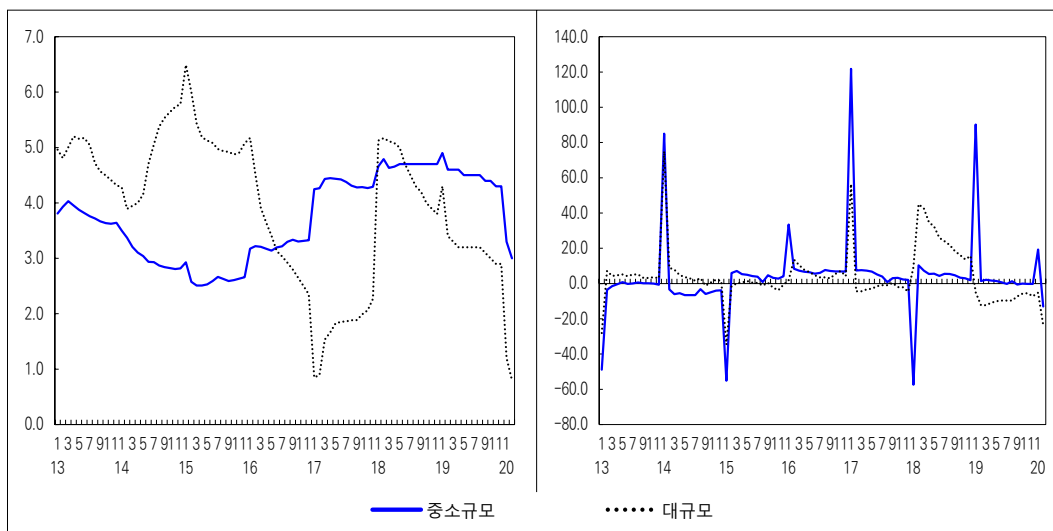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특별급여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많음.

○ 2020년 2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542천 원)이며, 그다음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701천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719천 원) 순이며 제조업은 3,749천 원으로 나타남.

– 2020년 2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73천 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357천 원) 순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18	2019	2019		2020	
			1~2월	2월	1~2월	2월
전 산업	3,376 (5.3)	3,490 (3.4)	3,792 (2.6)	3,644 (-3.3)	3,749	3,403
광업	3,835 (3.3)	3,977 (3.7)	3,960 (4.4)	3,755 (-2.9)	4,325	3,952
제조업	3,930 (6.5)	4,017 (2.2)	4,754 (1.6)	4,363 (-4.8)	4,424	3,74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2.5)	6,502 (1.0)	5,739 (1.5)	5,791 (-5.3)	5,813	5,70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6.5)	3,506 (6.6)	3,567 (8.4)	3,500 (-1.8)	3,828	3,516
건설업	2,784 (6.1)	2,951 (6.0)	3,016 (6.9)	2,894 (-1.4)	3,139	2,954
도매 및 소매업	3,214 (5.4)	3,372 (4.9)	3,546 (5.2)	3,526 (-0.2)	3,606	3,308
운수 및 창고업	3,357 (6.4)	3,476 (3.5)	3,503 (2.3)	3,476 (-5.5)	3,666	3,424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8.1)	1,875 (6.7)	1,919 (8.1)	1,887 (-5.3)	1,950	1,873
정보통신업	4,277 (3.8)	4,463 (4.3)	4,795 (5.2)	4,524 (-7.7)	4,994	4,837
금융 및 보험업	6,026 (5.6)	6,236 (3.5)	7,217 (3.3)	7,243 (-6.0)	7,304	6,542
부동산업	2,600 (6.3)	2,755 (6.0)	2,773 (5.2)	2,676 (-4.2)	2,910	2,73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5.9)	4,901 (3.0)	5,129 (0.2)	5,120 (-1.0)	5,138	4,71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5.5)	2,332 (5.9)	2,386 (6.3)	2,357 (-1.9)	2,449	2,357
교육서비스업	3,397 (2.5)	3,474 (2.3)	3,897 (1.1)	3,630 (-8.1)	3,693	3,27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4.8)	2,960 (5.8)	2,996 (6.3)	2,928 (-0.9)	3,020	2,850
여가관련 서비스업	2,684 (6.8)	2,819 (5.0)	2,861 (6.4)	2,735 (-1.3)	2,982	2,78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01 (7.2)	2,517 (4.8)	2,572 (3.6)	2,542 (-0.3)	2,597	2,434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는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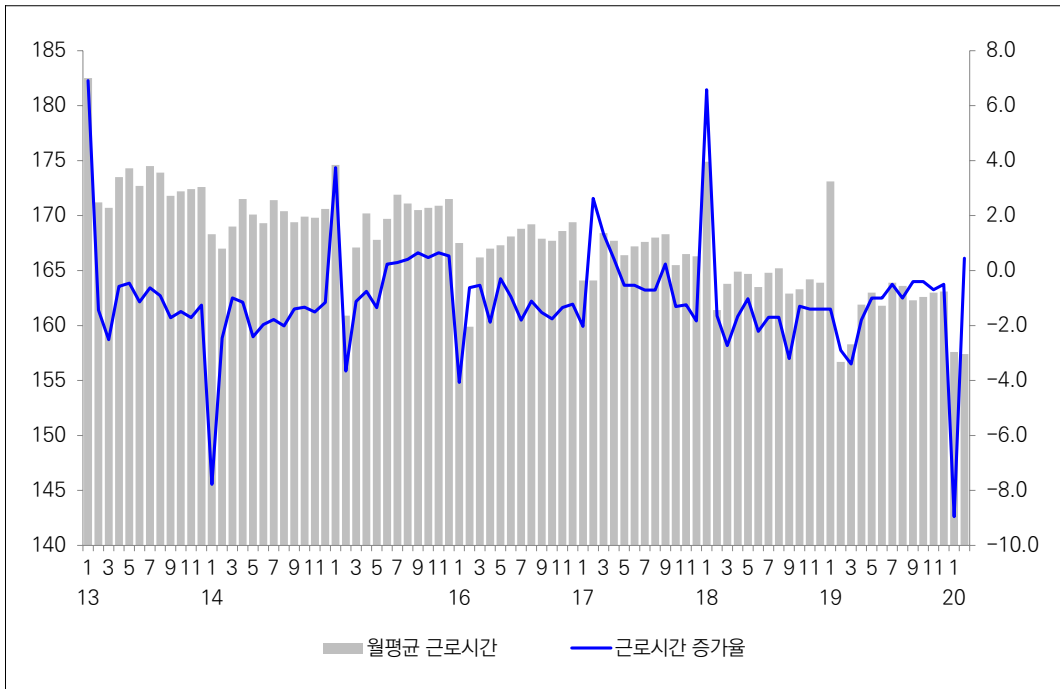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57.1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16.7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20일로 전년동월대비 3일 감소)

- 2020년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근로일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6.7시간 증가함.
 -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1시간 증가, 비상용(임시·일용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9.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시간 증가함.
 -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누계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주: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2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2020년 2월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56.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4시간 증가, 대규모 사업체는 160.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7시간 증가함.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8	2019	2019		2020	
				1~2월	2월	1~2월	2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56.5(-3.0)	140.1(-5.2)	156.9(0.3)	156.5(11.7)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3.6(-2.8)	146.0(-5.1)	164.1(0.3)	164.0(12.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5.3(-2.9)	138.1(-5.3)	156.5(0.8)	156.3(13.2)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8.3(-1.2)	8.0(-1.2)	7.7(-7.2)	7.7(-3.8)
	비상용근로시간	99.2(-6.1)	95.4(-3.8)	94.6(-5.9)	87.0(-7.9)	92(-2.7)	87.2(0.2)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0.5)	157.8(-2.9)	141.8(-5.2)	159.8(1.3)	160.5(13.2)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59.1(-3.0)	142.9(-5.2)	160.9(1.1)	161.6(13.1)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0.0)	148.0(-3.1)	131.7(-5.9)	149.7(1.1)	150.4(14.2)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1.1(0.0)	11.1(1.8)	11.2(0.9)	11.1(0.0)
	비상용근로시간	89.2(-1.2)	104.9(17.6)	116.0(0.7)	106.3(-1.9)	124(6.9)	124.2(16.8)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76.8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0.5시간)임.

- 2020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76.8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71.6시간), 부동산업(167.4시간), 제조업(169.8시간) 순으로 나타남.
- 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0.5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132.0시간),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45.9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48.6시간) 등으로 전 산업 평균 근로시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8	2019	2019		2020	
			1~2월	2월	1~2월	2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56.7(-2.9)	140.4(-5.2)	157.4	157.1
광업	176.6(0.5)	175.7(-0.5)	167.7(-0.4)	149.3(-3.4)	173.2	176.8
제조업	177.1(-1.5)	175.9(-0.7)	168.2(-3.1)	149.9(-5.4)	169.1	169.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56.3(-3.9)	150.3(-6.5)	160.8	159.7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0.4)	178.6(0.4)	171.2(-0.3)	155.1(-1.3)	170.4	171.6
건설업	138.5(-2.4)	136.3(-1.6)	132.7(-3.8)	118.9(-6.5)	134.3	132.0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0.2)	158.4(-2.2)	141.4(-4.9)	160.1	159.9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57.9(-3.7)	144.2(-5.4)	158.9	158.1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55.0(-0.3)	143.3(-1.0)	150.6	148.6
정보통신업	161.6(0.4)	163.9(1.4)	157.2(-1.2)	138.5(-4.2)	159.8	160.3
금융 및 보험업	160.9(0.2)	161.5(0.4)	155.0(-2.7)	136.8(-5.6)	158.1	158.4
부동산업	178.9(-3.2)	176.4(-1.4)	169.9(-3.6)	154.2(-5.3)	168.5	167.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0.2)	161.4(0.6)	153.7(-2.7)	135.6(-5.6)	157.7	158.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55.5(-2.8)	139.9(-5.2)	159.1	158.4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38.1(-4.2)	123.3(-5.8)	130.5	130.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55.1(-2.9)	138.8(-5.1)	155.1	154.4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48.8(-2.6)	133.5(-6.9)	148.3	145.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54.6(-2.5)	138.8(-4.4)	154.8	155.2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는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0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33건
 - － 4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건수(140건)보다 107건 적은 수치임.
- 2020년 4월 조정성립률 64.3%
 - － 4월 조정성립률은 전년동월 성립률 50.6%에 비해 13.7%p 높아진 수치임.

〈표 1〉 2019년, 2020년 4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0. 4	33	30	18	9	9	10	0	10	0	2	20	64.3%
2019. 4	140	103	45	19	26	44	5	39	0	14	84	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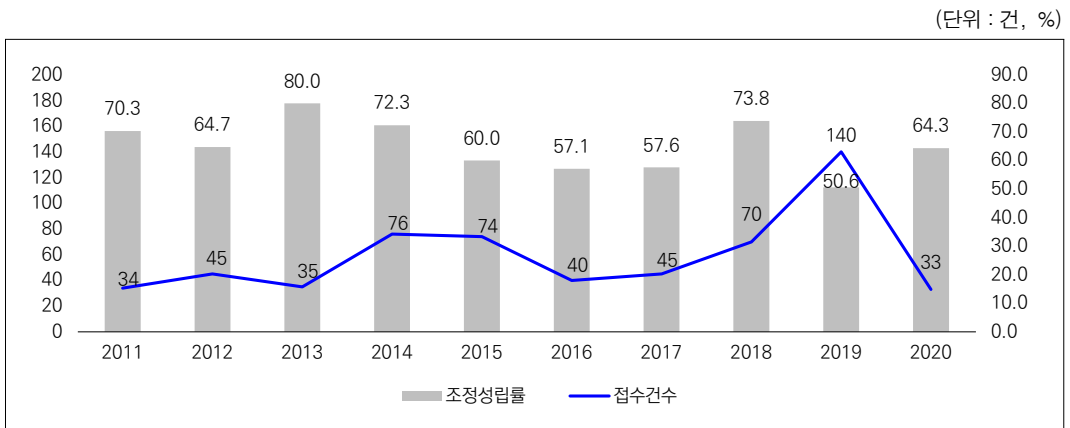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표 2〉 2011~2020년 4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1. 4	2012. 4	2013. 4	2014. 4	2015. 4	2016. 4	2017. 4	2018. 4	2019. 4	2020. 4
접수건수	34	45	35	76	74	40	45	70	140	33
조정성립률	70.3%	64.7%	80.0%	72.3%	60.0%	57.1%	57.6%	73.8%	50.6%	64.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1~2020년 4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 심판사건

- 2020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1,384건
 - 4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동월(1,339건)보다 45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8.7%(113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91.3%(1,191건)를 차지함.

〈표 3〉 2019년, 2020년 4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0. 4	1,384	1,304	103	10	225	60	533	373	2,598
2019. 4	1,339	1,256	149	18	218	65	456	350	2,322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0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0건
 - 4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건수는 전년동월(191건)보다 191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0%(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0%(0건)를 차지함.

〈표 4〉 2019년, 2020년 4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0. 4	0	0	0	0	0	0	0	0	0
2019. 4	191	161	35	0	14	2	110	0	91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경사노위,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노사정 합의

-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건강장해 예방 위한 합의문 도출
 - 4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이번 합의문은 2019년 10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탄력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의 후속 합의임.

- 노사정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과 세부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실태조사 추진과 노사정 참여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에 합의하였음.
- 또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서비스업종을 위해 서비스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방안도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노사정은 ▲서비스부문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시행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한 예산·인력 확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전문가 참여 TFT 구상과 행정집행체계 구축 등에 합의하였음.
- 노사정은 산재 발생 위험이 큰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산재예방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합의했음.
-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행정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음. 단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경력관리 시스템(인사구조)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시스템(조직구조) 개편을 검토·추진하기로 합의했음.

◆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 출범

○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등 삼성그룹의 6개 노동조합 참여

- 5월 6일 한국노총 산하의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가 공식 출범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측에 무노조 경영 폐기와 노동3권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였음.
- 이날 6개 노조는 삼성그룹에 ▲무노조 경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및 폐기 선언을 할 것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음.
-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금속노련 산하 삼성SDI울산노조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전자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에니카손해사정보험, 화학노련 산하 삼성웰스토리노조로 총 6곳임.

◆ 용인경전철 노사 1년 2개월 만에 임·단협 타결

○ 기본급 2~3% 인상·141개 조항 협약 등 합의

- 4월 22일 경전철 노사는 1년 2개월 만에 2019년 임·단협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음.
- 경전철 노사는 이날 기본급을 2~3% 인상하고 1인당 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임금협상과 141개 조항으로 된 단체협약에 최종 서명하였음.
- 양측은 4월 14일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이에 노측이 20~21일 찬반투표에서 93% 찬성률로 가결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였음.

◆ 강원대병원, 비정규직 101명 정규직 전환 4일 임명장 수여

- 업무협력직으로 청소·경비 근로자 등 직접고용
 - 5월 4일 강원대병원은 간접고용 근로자 101명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고 정원에 반영하였다고 밝혔음.
 - 강원대병원은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즉시 전환작업에 착수해 2018년 기간제 근로자 36명을 우선 정규직화하였음.
 - 하지만 청소, 경비 등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근무 중인 간접고용 근로자 100여 명에 대한 전환은 그 규모와 전환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 등 난항을 겪어오다가 2019년 11월 22일 합의에 도달하였고, 합의에 따라 101명이 정규직으로 임용되었음.
 - 이들은 병원 단체협약 및 제규정(복리후생과 보수규정 등 일체)을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 받게 됨에 따라 진료비 감면, 복지포인트, 유급 병가 및 유급 질병휴직 등 일체의 복지혜택을 받게 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347건 중 검찰 송치는 '22건'

- 노동부 '처리 완료' 2,739건
 - 4월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347건이었음.
 -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처리를 완료한 사건은 2,739건이고, 나머지 608건은 아직 처리중이며, 처리된 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이었음.
 -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1,638건)이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912건), 따돌림·힘담(456건), 업무 미부여(115건), 강요(113건), 차별(78건), 폭행(75건), 감시(42건), 사적 용무 지시(29건) 순이었음.
 -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제조업(607건)이 가장 많았고 경비·청소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492건)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72건)도 많았음.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1,923건)이 절반을 넘었음.

◆ 코로나19 피해 기업들 “IMF 때보다 경제 충격 30% 더 크다”

○ 경총, 코로나19 피해 기업 223곳 대상 현황조사

- 5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223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 인식 및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약 30% 정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올해 연간 실적 전망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2/3 이상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고 응답하였음. 이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 72.4%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 70.6%의 응답을 보였음.
- 신규채용·신규투자 계획에 관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26.5%가 ‘신규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2.4%는 ‘신규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응답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개선’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라고 답변(37.8%)했고, 그 외에는 ▲‘해고 요건 개선’ 18.9%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14.9% ▲‘기간제·파견 등 규제 개선’ 9.0% ▲‘기타(없음 등)’ 19.4% 순으로 집계되었음.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코로나19로 경영 타격 받아”

○ 중기중앙회, 1,234곳 대상 업종별 피해실태 조사

- 5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0~23일 중소기업 1,23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관한 업종별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영상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2.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제품업, 비제조업 중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의 100%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답했음. 구체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업에 이어 가죽·가방·신발업(96.2%), 인쇄기록매체 복제업(89.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89.3%) 등의 피해가 컸으며 비제조업에서는 교육서비스업(92.6%),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7.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6.4%) 등이 숙박·음식점업에 이어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조업은 내수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81.2%), 운영자금 부족·자금압박(37.3%), 계약 물량(수출물량 포함) 취소(19.4%) 등을 들었음. 비제조업 역시 내수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81.4%)를 가장 많이 거론했고 운영자금 부족·자금압박(52.5%), 상가 임대료 부담(7.3%) 등을 들었음.
- 중소기업들은 당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를 요구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지원 확대(51.8%), 금융기관의 과감한 대출 유도(41.9%) 등도 시급하다고 답했음.

◆ 대법 “협력업체도 노동자 산재 사망 책임 있다”

- 4월 2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ㄱ, ㄴ사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쟁점은 작업장을 직접 운영·관리하지 않는 협력업체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지는지였고, 1심과 2심은 협력업체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을 작업장에 보낼 뿐이기에 그럴 의무가 없다고 봤음. 그러므로 1심과 2심은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하였음.
-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 발생 방지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음. 또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음.

◆ ‘태아 건강 손상’ 첫 산업재해 인정

○ 선천성 질환 아이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에 승소 취지 판결

- 4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

다”고 판시했음.

-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질병)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음. 그러면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며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음.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 이후 모체에서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봤음.

◆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확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4월 21일 중소기업 및 특별고용유지업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그간 기존 고용유지지원 비율 75%를 제외한 나머지 25%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임.
-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됨.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전주시 ‘코로나19 해고 없는’ 도시 만든다

○ 기업에 고용보험 가입 유도하고 전주시는 각종 지원금 지급

- 4월 21일 전주시와 고용 관련 기관, 기업체 노사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 선언을 채택하였음.
- 상생 선언은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

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지는 것이 핵심임.

- 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6개월간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유급 휴직할 때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음.
- 시는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 상생 선언 참여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 원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기업당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또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로 점용료 등 공공요금은 감면해주기로 하였음.

◆ 항공기 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무급휴직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씩 지급

- 4월 27일 고용노동부는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음.
- 고용노동부는 이미 3월 22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으로 업종은 8개로 늘었음.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조정,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도 착수하였음.
-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사업으로, 해당 무급휴직 노동자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 한 사업장만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음.

◆ 현재 “교원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는 위헌”

○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

-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 현재는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떤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음.
- 또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도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 다만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22조 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음.
- 마지막으로 현재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